

N · E · W · S · P · L · A · Z · A

# 해외 경쟁정책동향

본협회 조사부

## 미국

**미국 연방정부와 각 주, M&A 심사에 상호협력키로**

미국 연방정부와 각 주의 정부는 3월 11일, 각 기관이 현재 각자 실시하고 있는 M&A(기업결합 및 취득)의 심사에 대하여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이를 효율화하는 데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언론 등에 대한 비밀유지 등을 조건으로 심사에 결정적인 정보 및 증거를 교환하는 것이 그 주를 이룬다. 중복절차 등의 번거로움이 생략되기 때문에 호황기를 맞고 있는 미국 기업의 전략적 리스트러처링 및 업태전환이 한 단계 더 신속하게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이 정비된다 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연방 차원에서 법무부나 연방거래위원회(FTC) 중 어느 한 쪽이 기업결합 심사를 행하는 외에, 이에 관계되는 여러 주의 반트리스트당국도 독

자적인 심사를 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각각 개별적으로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과다한 시간이 걸리고 신속한 M&A전략을 취 할 수 없다는 불만이 산업계를 중심으로 중대하여 왔다.

법무부, FTC 및 전미국검사회(NAAG)에 따르면, 이들 세 기관은 이러한 비판에 대응하여 기업결합심사를 상호 협력체제로 수행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앞으로는 ① 적당하지 않은 정보공개를 피할 것, ② 언론에의 정보공개도 사전에 조정할 것, ③ 안전마나의 담당기관을 상호 간에 통지할 것 등을 확인하고, 각 기관이 수집한 심사자료와 증거, 증인심문내용, 그 안건에 적용되는 판단기준 등의 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미국에서는 1997년의 M&A 총액(발표 기준)이 전년도에 비하여 40% 증가한 6,535억 달러로 과거 최고를 기록하였다. 규제완화에 의해 경쟁이 격화된 한편, 높은 주가에 의해 기업의 자금조달력이 향상되었다는 것이 그 배경을 이룬다. 이 중에서

도 WorldCom사에 의한 MCI Communications 취득 등 통신, 금융, 전력 분야에서의 대형 M&A가 눈에 띠고 있다.

■ '98. 3. 12, 일본경제신문

**FTC, 안구수술용 레이저기구 제조업체들을 가격고정 공모협의로 기소**

새로이 등장하여 인기를 더해 가는 시력교정 안구수술인 광(光)굴절 각막교정수술(photor refractive keratectomy, 이하 “PRK 수술”이라 함) 시술을 위한 레이저기구를 판매하는 기업들인 두 업체가 3월 24일 가격고정 공모협의로 FTC에 의해 기소되었다. 동 위원회에 따르면 Summit Technology Inc. 및 VISX, Inc.는 미국에서 PRK 수술에 사용되는 레이저기구를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들이다. 이들은 서로 경쟁하는 대신 경쟁관계에 있는 특허를 공유제로 하여 Summit사와 VISX사의 제품이 사용될 때 마다 그 수익을 공유한 것이었

다. 가격고정 혐의 외에 동 위원회는 VISX사가 사기에 의하여 연방특허청으로부터 주요 특허를 얻었다고 하여 기소하였다. 이러한 위법한 활동의 결과는 가격 인상 및 소비자 선택 폭의 축소였다고 FTC는 밝혔다. 동 위원회는 당사자들이 특허 공유제를 해체하여 경쟁관계에 있는 특허들이 더이상 한 단체에 속해 있지 않도록 하고, 의사들이 이들 기업의 PRK 레이저를 사용할 때에 지불할 가격의 고정 및 VISX사가 사기로 취득한 특허의 실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명령을 추구하고 있다.

“이들 두 기업의 위법한 활동 때문에 소비자들은 작년에 약 3,000만 달러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였다”라고 FTC 경쟁 국장인 William J. Baer는 말하였다. “Summit사와 VISX사는 레이저 안구수술 시장을 독점화하고 새로운 수술법의 가격을 인상시킴으로써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경쟁의 압력을 제거하려 하였다. 반트리스트법은 적법하게 획득된 특허권은 존중한다. 그러나 그 권리가 남용되거나 사기에 의하여 취득되었을 경우, 우리는 적극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동할 것이다.”

PRK 수술은 새로운 수술법으로서, 주로 근시 및 난시 교정에 사용된다. 이에는 빛이 적

절하게 초점에 모이도록 하고 물체의 상이 또렷이 보이도록 하기 위해 안구의 각막 일부를 교정하는 특수 레이저의 사용이 필요하다. 동 위원회에 따르면 미국에는 시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대략 1억 4,000만 명 정도 있으며 대부분은 콘택트 렌즈나 안경으로 시력을 교정하고 있으므로, PRK 수술의 잠재적 수요는 매우 크고 현재 성장일로에 있다. FDA가 승인한 PRK 레이저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첫 해인 1996년에는 미국 내에서 대략 70,000건의 수술에 Summit사 및 VISX사의 기구가 사용되었다. 일부의 예측으로는 2000년까지 연간 50만 건의 PRK 수술이 행해질 것이라고 FTC는 밝혔다. 현재 PRK 수술비용은 1건당 1,500달러 내지 2,250달러이다.

FTC에 따르면 Summit사 및 VISX사는 각각 레이저 안구수술에 관한 독자적 기술을 개발하였고 또한 개별적으로 특허권에 의한 보호를 추구하였었다. 그러나 이들은 시장에 진입하여 서로 경쟁하는 대신 특허 공유제를 통하여 그들의 특허를 서로 제공하였다. 동 기관의 주장에 따르면 그 결과는 경쟁을 두 방향으로 제약하였다고 한다. 첫째, 당해 기업들은 더 이상 가격경쟁을 벌이지 않았다. 특히 공유제로 인해 각 기업이

생산한 레이저기구가 PRK 수술에 사용될 때마다 250달러의 사용료가 부과되었다. 이러한 사용료에서 얻어지는 수익은 사전에 결정된 비율에 따라 두 기업간에 분배되었다고 FTC는 주장하였다. 이러한 전당 사용료의 효과는 어느 기업도 수술 1건당 250달러 미만으로 가격을 책정할 유인이 없어지게 되었다고 동 위원회는 밝혔다.

당해 특허 공유제의 또 다른 효과는 이들 기업이 더 이상 PRK 기술의 라이센싱 분야에서 경쟁할 유인도 없었고 그럴 능력도 갖지 못하였다는 것으로서, 어느 기업도 다른 기업의 승인 없이는 자신의 기술을 라이센스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매사추세츠 주 Waltham에 소재하고 있는 Summit사는 미국 및 40개 국가에서 PRK 수술용 엑시머 레이저기구를 판매하고 있으며, 이 레이저기구는 1995년에 FDA의 승인을 받았다.

캘리포니아 주 산타클라라에 소재하고 있는 VISX사는 1996년에 동 회사의 PRK 수술용 엑시머 레이저기구에 관하여 FDA의 승인을 받았으며 Summit사의 레이저와 마찬가지로 간단한 근시 및 난시 치료 용으로 승인을 받았다.

■ '98. 3. 24, 미국 FTC 보도

## 미 법무부, 록히드 마틴사의 노스롭사 취득계획 저지에 나서

미국 법무부는 록히드 마틴사가 83억 달러로 Northrop Grumman Corp.(이하 “노스롭사”라 함)를 취득하려는 계획이 반트러스트법 위반임을 이유로 이를 저지하여 줄 것을 연방 법원에 청구함으로써 5년 동안 자유로이 이루어져 왔던 방위산업에서의 기업결합에 제한을 가하였다.

관련 기업들은 당해 기업결합의 성사를 위하여 법원에서 다툴 것임을 공언하였는데, 이는 법무부가 이의를 제기한 기업결합 중 가장 큰 규모이다. 국방부는 법무부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은 4월 24일 완료 예정이었던 당해 취득을 최소한 3개월 정도 지연시킬 것으로 보인다.

만일 항공우주산업의 이들 두 대기업이 패소한다면 현재로서 그들의 계획은 기업결합 계획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당해 기업들의 정책결정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밝혔다. 법원에서 패소하더라도 이들 회사들은 노스롭사 일부의 매각을 제안하거나 기업결합 후 탄생할 기업의 일부를 자회사로 독립시킴으로써 규제당국의 인가를 얻는 것을 배제한 상태라고 한다.

이들 두 기업의 임원들은 국방부 및 법무부의 고위관리들이 군용 항공기의 주요 제조업체인 록히드 마틴사와 전투 및 정찰 목적으로 항공기에 장착되는 복합 레이더 및 전자장비 생산업체인 노스롭사간 기업결합의 “수직적” 측면에 완강히 반대하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시너지 효과로 인해 록히드 마틴사는 당해 기업결합을 매력적인 것으로 본 것이었는데, 관련 기업들은 정부의 반대를 유발시키고 있는 사업부문 중 어느 하나도 포기하지 않은 채 정부의 우려를 불식시키려 하였었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된 소에서 법무부는 당해 결합이 “전례 없는 수직적 및 수평적 시장집중”을 야기하는 한편 국가방위에서의 주요 제품 시장에서의 경쟁을 “감소 내지 제거” 할 것이라고 하였다. 법무부의 소장은 충분한 수의 군용 항공기 제조업체가 시장에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록히드 마틴사가 레이더, 전파방해장치 및 여러 유형의 항공기 및 잠수함에서 사용되는 기타 기술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보유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스롭사가 독립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록히드 마틴사의 경우 법원에서의 재송은 매릴랜드주 Bethesda에 소재한 군수기업과 그 기업 수입의 약 절반을 제공

하는 최대 고객인 군과의 싸움을 의미한다. 당해 기업결합을 수정 없이 진행하려는 법적 분쟁에서 패배한다면, 특히 군용 레이더 시장에서 Raytheon Co. 와 같은 군수전자산업의 경쟁업체보다 앞서고자 하는 이들 업체들의 희망은 좌절될 것이다.

당해 기업결합이 성사되지 못할 경우 노스롭사는 소규모 기업의 취득을 재개하는 한편으로 보잉사 및 록히드 마틴사의 상업용 및 군용 항공기 부품의 주요 공급업체라는 지위를 최대한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로스앤젤레스에 소재한 노스롭사는 록히드 마틴사, 보잉사 및 Raytheon사가 지배하는 통합된 군수 시장에서 미약한 4위업체로 존재하는 것을 피하고자 하여 왔다.

공동성명에서 이들 두 기업은 자신들의 기업결합은 경쟁을 종료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방부의 예산을 절약하고 미국에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 분야에서의 경쟁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들 기업의 임원들은 최근 몇 주 동안 점증해온 정부측의 자산매각에 대한 요구는 자신들이 기업결합 계획을 완전히 포기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의도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노스롭사를 그대로 두면 경쟁이나 제품 라인의 향상 없이 정부 비용만 증가할 것

이라고 하였다.

정부 관리들은 당해 기업결합 저지를 위한 소를 제기하였다는 것을 발표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였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경쟁 관련 문제가 도처에 걸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법무부 반트러스트국장인 Joel Klein은 말하였다. 법무부장관인 Janet Reno는 정부의 조치는 금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방위산업이 경쟁적이고 혁신적인 상태로 남아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인명을 구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국방부의 군수조달처장인 Jacques Gansler는 노스롭사가 비록 주요 계약업체로서의 역할은 감수되었지만 군용 항공기 제조업체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3월 23일의 기자회견에서 그는 당해 기업결합이 저지된다면 적어도 6년간 노스롭사는 “생존이 가능한 기업”으로 존속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탐지를 피할 수 있는 “스텔스” 기술, 항공기 하부시스템 및 군수전자기술에서의 동 기업의 우위를 강조하였다.

이들 기업의 임원들은 정부의 당해 기업결합에 대한 이의 제기에 놀랐다고 하고 있지만, 몇몇은 상당한 규모의 기업결합은 저지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하기도 하였다. 1996년에 록

히드 마틴사 회장인 Norman Augustine은 국방부의 지도급 인사들이 언젠가는 “자유기업 체제만으로는 군수산업 기반의 존속이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는 기업의 수가 줄어들면서 국방부 관리들이 “충분한 기업이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을 결정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의 Klein 국장은 23일, 자신은 군수산업에서의 기업결합을 “급작스럽게 중단시키려” 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시장에서의 경쟁업체가 줄어들수록 수직적 통합 문제는 더욱 중요해진다”고 덧붙였다.

■ '98. 3. 24, The Wall Street Journal

### USTR '98년 무역장벽 보고서에 “약체 공취위” 언급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월 31일, 무역상대국의 문제점을 열거한 「1998년 외국 무역장벽 보고」를 발표하였다.對일본관계는 9개 분야 50개 항목에 달하여 최대 중점이 두어졌다. 그 중에서도 일본에는 외국투자에 대한 장벽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 및 경쟁정책에 관하여 독점금지법 위반 단속이 미약하다는 점이 언급되어 있어, 앞으로 미·일 통상문제가 최전선에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보고서는 对일본관계가 약 50페이지로서 전체의 8분의 1을 차지하여 그 비중이 제1위이다. 자동차로부터 반도체, 항공사업과 지금까지의 미·일 통상교섭의 과정을 망라하고 있다. 항공교섭의 타결로 「주요한 과제는 일단 해결되었다」는 것이 미·일 관계자의 대체적인 견해이다.

한편, 일본 내의 경기침체로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감소, 결과적으로 대일무역적자는 증가 일로에 있어 보고서는 강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런 까닭에 미국정부가 앞으로 또다시 통상교섭에서 일본에 압력을 가하여 올 공산이 크다.

보고서는 규제완화와 경쟁정책의 촉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투자장벽」으로서 1996년 현재 일본의 해외에의 직접투자가 480억 달러에 달하는 반면 외국의 일본에의 직접투자가 70억 달러에 지나지 않는 점에 대하여, 「195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 일본정부가 외국투자를 방해하여 온 결과이다」라고 하고 있다. 더욱이 현재도 방송, 유선TV, 전화사업 등에 외국투자의 제한이 있다고 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쟁정책이 충분히 가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 그 이유를 「공정취인위원회가 약체이기 때문이다」라고 한

후, 「공취위는 역사적으로 대장성, 통산성, 외무성 등의 관료들의 낙하산 인사를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전 관료들을 받아들인 결과 공취위가 독립성을 잃고 있다고 보여진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98. 4. 1. 산케이신문

## EU

### 구주위원회, 스테인레스 강(鋼) 제조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결정

지난 1월 21일 구주위원회는 스테인레스강에 관한 가격담합 행위(Cartel)를 한 제철회사 6개사에 대하여 ECSC조약 제65조에 위반된다고 하여, 행위 중지명령 및 총액 약 3,200만 ECU의 과징금 부과명령을 하고 그 내용을 발표하였다. 상기 발표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본건 결정의 대상이 된 사업자 및 각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액은 다음과 같다.

- Acerinox SA : 353만ECU  
(약 593천원)
- ALZ NV : 454만ECU  
(약 763천원)
- Acciai Special Termni SpA : 454만ECU  
(약 763천원)

- Avesta Sheffield AB : 281만ECU(약 472천원)
- Krupp Thyssen Nirosta GmbH : 810만ECU  
(약 1,362천원)
- 내 Krupp : 454만ECU  
(약 763천원)
- Thyssen : 356만ECU  
(약 598천원)
- UsinorSA : 386만ECU  
(약 649천원)

2. 위의 어느 것이나 스테인레스 강판제조업자인 관계인은 1993년 12월 16일에 마드리드에서 개최한 회합에서 「합금(Alloy)부과금」이라고 불리는 가격에 덧붙여 인상케 하는 종류로 계산방법의 변경에 의하여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할 것을 결정하였다. 관계인은 1994년 2월 1일부터 스페인 및 포르투칼을 제외한 구주의 전지역에서 전 제품의 판매에 변경된 계산방법을 적용하여 왔다. 관계인은 합금하여 이용하는 금속가격의 인상 및 스테인레스강의 시장가격의 하락에 대응하고자 전기의 계산방법 변경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주위원회는 관계인이 임의로 자신의 상품가격을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론을 제기할 수 없지만, 공동의 가격조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한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본건 협정 때문에 1994년 1월부터 1995년 3월까지의 기간에 스테인레스강의 가격은 약 2배로 인상되었다. 1996년 11월에 위반행위를 중지한 Avesta를 제외한 관계인은 현재까지 약간의 수정을 가한 형태로 본 협정을 계속 실시해오고 있다.

3. 관계인 각사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시에는 위법행위의 약질성, 실시기간, 기타 과징금의 증감 뿐 아니라 일체의 사정 및 구주위원회의 심사절차에 대한 협력의 정도를 참작했다.

Avesta 및 Usinor에 대해서는 구주위원회에 협조를 개시한 시기가 자연되었을 뿐 아니라 전면적인 협력이 없었고, 기타의 사업자들은 충분히 협조적이었다고 말할 수 없다.

■'98. 1. 21. 구주위원회 발표문

### 구주위원회, 폭스바겐(Volkes Wagen AG)사에 과징금 부과 결정

지난 1월 28일 구주위원회는 폭스바겐(Volkes Wagen AG : 이하 「폭스바겐」이라 한다)사에 대하여 이태리에서 자사의 특약점을 경영하면서 외국고객의 자사제품 구입에 응하지 않도록 강제한 것이 EU경쟁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1억200만ECU(약

201,813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폭스바겐은 동 결정에 불복하고 구주 제1심법원에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상기 발표요지는 다음과 같다.

1. 구주위원회는 폭스바겐이 이태리에서 특약점을 경영하면서 국외, 특히 독일 및 오스트리아의 고객에 대한 폭스바겐 및 아우디(Audi)의 판매를 금지함으로써 1억200만ECU(약 201,813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1995년 이후 많은 소비자로부터 이태리에서 새차를 구입하는 것이 어렵다는 고충이 구주위원회에 제출되어왔다. 폭스바겐의 이태리 자회사인 Autogerma 및 Audi가 이태리내 특약점의 양해를 받아 이태리에서 타국, 특히 독일 및 오스트리아에의 판매를 실질적으로 방해·제한하는 전략을 채택하여 웃음을 시인하였다.

폭스바겐은 3개월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고 동시에 2개월 이내에 구주위원회가 명령한 위반행위를 배제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본건 결정은 폭스바겐 및 아우디의 신차를 최근까지 독일 및 오스트리아의 고객은 이태리의 특약점에서 구입하는 데 어려움을 당한 바 있는 소비자들로부터의 신고에 의해 조

사를 착수하고 심사절차과정을 밟은 것이다.

1995년 10월, 구주위원회는 Wolfsburg에 소재하는 폭스바겐, Ingolstadt에 소재하는 아우디, Verona에 소재하는 Autogerma(폭스바겐의 100% 자회사로서 폭스바겐 및 아우디의 이태리 내 정규특약점) 및 북이태리에 소재하는 몇 개의 특약점에 대하여 입회조사를 실시하였고, 동 조사에서 발견된 자료에서 폭스바겐, 아우디 및 Autogerma에 의하여 할당된 지역의 폐쇄정책을 분명히 검증하였다.

동 검사에서 발견된 증거문서는 아래의 위반행위를 증명하였다.

- (1) 약 50개사의 특약점에 대하여 외국인고객에게 신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동 계약을 해제한다고 위협하고 외국인고객에게 판매한 12개 특약점은 실제로 계약이 해제되었다.
  - (2) 할당된 지역 이외에 판매한 특약점에 대하여 판매 이익 및 보너스가 조직적으로 절하되었다.
  - (3) 이태리 특약점에 대하여 공급삭감. 아우디는 1995년도에만 Autogerma가 공급화약한 이태리의 특약점에 대하여 약 8,000대의 공급을 거절했다.
- (4) 외국인고객에게 판매하는 이태리의 특약점을 감시하에 두고 외국인고객 명단을 조사하는 Autogerma의 내부규칙
- (5) 폭스바겐 및 아우디는 이태리의 특약점에 대하여 이태리에서 외국고객에게 판매를 금지하는 정당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고객의 신차구입을 단념케하기 위해 장비의 상이함과 보증설시의 어려움을 구실로 삼고, 또한 고객에 대한 판매거절의 지시가 폭스바겐에서 나오고 있음을 분명히 하지 않은 채 이를 추천하고 장려하고 있었다.
3. 추가하여, 구주위원회의 검사관은 발견한 여러 증거 중에서 폭스바겐 및 아우디가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을 판명하였다.
- 1995년 2월, 아우디는 「이태리에서 신차의 외국인구입 방해조치와 재수입을 방해하는 방침이 결정되면 일정한 위협이 발생한다」고 서면에 기입하고 있다. 또한, 폭스바겐은 「특약점의 보상금의 세분화」는 그 목적이 구주위원회가 촉진하고자 하는 국경을 넘는 거래의 방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유통에 관한 구주법에 위반되고, 당해행위

는 과정금의 대상이 될 우려가 대단히 크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1995년 7월자'라고 손으로 쓴 메모지에서 폭스바겐은 「정치적인 이유에서」 또한 「일괄 적용면제의 철회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용에 Autogerma 가 이해한 자동차판매의 방해 행위에 대하여 구주위원회에 신고한다고 위협을 하여온 「정직한 중개업자」를 적절히 회유할 것을 권하고 있다.

아우디도 같은 방법으로 독일연방당국에서 차량등록 데이터를 제공받아왔다. 폭스바겐과 아우디는 자동차의 판매원 및 판매선을 알아내기 위하여 송장 및 판매계약서의 작성에 EU자동차기준적합증명서(certificats de conformite)의 발행을 관련시키고 있다.

후안 미루트 위원(경쟁정책담당)은 본건 결정에 관하여 「각 위반사건에서 자동차 유통에 관한 규칙을 존중하지 않는 자동차제조업체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일에 대하여, 구주위원회는 무엇이든지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했다. 동 위원회는 「한편으로는 자동차제조업자는 자신의 유통조직(Net Work)에 관해서 재량을 갖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자가 신성한 법에 의하여 구주연합의 역내에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과 그 이익을 향유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4. 본건 위반행위는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관행화되어 있다.

구주위원회는 본건 결정에서 구주 자동차제조업계에서 최고의 유력한 그룹인 폭스바겐/아우디가 단일시장의 기능을 위협하고, 경쟁에 관하여 공동체법에 크게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 과정금 산정에서 구주위원회는 위반행위의 기간이 10년간을 초과하여 왔고, 또한 폭스바겐 그룹의 구성기업이 이태리의 특약점 조직망(Net Work)에 대하여 갖고 있는 경제적 지배력을 경제제한적 행위의 실행을 위하여 행사하고 있음을 고려했다. 추가하여 구주위원회는 이러한 중대한 위반행위를 중지하고 구주위원회의 어떤 명령에 대해서도 폭스바겐이 적절히 대응해나가지 못한 행위를 고려했다.

본건에서 과정금액이 거액인 것은<sup>1)</sup> 이러한 행위를 용인치 않고 또한 역내시장을 폐쇄하고자 하는 다른 제조업자에 대해서도 엄정히 임하는 것이 구주위원회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또한 본건 결정은 관계인에 대하여 이태리 이외의 가맹국의 최종고객, 정규 중개업자 또는 다른 정규특약점에서 신차를 이태리에서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고, 또는 금지하는 제한조항을 특약점 계약에서 삭제할 것을 명했다. 이와 관련하여 구주위원회가 폭스바겐/아우디 사건에서 과정금 부과를 채택할 정도의 본건 결정에 의하여 같은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금후에는 제1차적으로 가맹국의 경쟁당국 또는 가맹국 법원에 불복 신청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가맹국 기관은 자동차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위반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 '98. 1. 28, 구주위원회 발표문

유럽위원회, 이탈리아 경쟁당국에 Promodès사와 Schemaventuno사의 GS사 취득제안 일부의 회부를 결정, 나머지 부분은 인가

유럽위원회는 Promodès사가 이전에 Schemaventuno사(베네통사 및 델베키오 일가가 지분 보유)의 단독 지배하에 있었던 GS사의 지배권을 Schemaventuno사와 공유하겠다고

1) 기업에 대한 과정금액의 거거의 최고액은, 1991년의 Tetra Pak II 사건에서 7,500만ECU였다.

한 취득제안의 일부에 대한 검토를 이탈리아 경쟁당국(Autorità Garante della Concorrenza e del Mercato)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였다.

같은 날 채택된 두 번째 결정에서 동 위원회는 당해 사업의 나머지 부분을 공동시장과 양립할 수 있는 것으로 선언하였다.

이탈리아 경쟁당국은 1998년 2월 16일 동 사건의 일부의 회부를 요청하여 왔는데, 새로운 그룹의 창설은 이탈리아 내 일부 지역의 소매유통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형성 내지 강화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특히 이탈리아 경쟁당국은 토리노, 베르첼리 및 아오스타 지역을 적시하였다.

동 위원회는 당해 취득의 영향이 이들 지역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이탈리아 경쟁당국에 이 사건을 회부하기로 결정하였다. 사실 동 위원회는 적절한 경쟁 분석을 위해서는 국별 경쟁당국이 사건을 검토하여야만 관련 지역 시장의 확정 및 당해 취득에 의해 형성되는 소매점 지위의 정확한 측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동 사건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동 위원회는 신고된 당해 취득이 개별국가 차원에서 어떠한 심각한 우려도 제기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정확한 제품 시장 확정결과에 관계없이 관련

당사자들의 시장점유율의 합계는 일반적으로 낮다; 유일한 예외는 초대형 수퍼마켓으로서, 이 분야에서 당사자들은 대략 25%의 점유율을 보유하게 된다.

동 취득의 영향은 주로 북서부 이탈리아(피에몬테와 롬바르디아)에 국한된다. 이 영역에서도 당해 취득은 판매점의 국소화, 시장점유율의 증가의 미미함 내지 상당수의 경쟁업체의 존재 등에 비추어 볼 때 심각한 우려를 야기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결론은 위에서 언급한 3개 지역을 제외하고는 당해 취득 전반에 미친다.

따라서 동 위원회는 당해 취득이 이탈리아 경쟁당국에의 회부 대상이 아닌 부분에 관하여서는 공동시장과 양립할 수 있다고 선언하였다.

■ 1998. 3. 11, 유럽위원회 보도

## 일본

공취위, 이시카와 현 265개 건설회사 담합에 배제권고

이시카와(石川) 현과 카나자와(金澤) 시 발주의 공공공사를 둘러싼 담합사건에서 공정취인위원회는 2일, 지금까지 알려져 왔던 카나자와 시내 141개 사에 124개 건설회사를 더하여 총 265개사(지점 포함)에 대해

여 독점금지법 위반(부당한 거래제한의 금지) 의혹으로 담합을 중지하도록 명하는 배제권고를 행하였다. 권고대상으로는 동 경증시 1부에 상장된 「眞柄建設」(본사 카나자와 시) 및 현내 대기업인 「治山社」(본사 카나자와 시) 등이 포함되었다. 권고를 받아 이시카와 현과 카나자와 시는 대상업체의 지명자격을 2~3개월간 정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과징금 총액은 20억엔 가까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들 업체들은 현의 공공공사 지명업체의 거의 10분의 1, 카나자와 시 지명업체의 6할에 해당한다. 공취위에 따르면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한 번에 배제권고를 낸 업체수가 265개사가 된 것은 역대 최다라고 한다.

조사에 따르면 권고대상업체들은 늦어도 1994년 4월부터 1997년 9월까지의 사이에 동시가 지명경쟁입찰로 발주한 건축공사와 하수도 정비 공사, 그리고 이시카와 현 카나자와 시 토목사무소가 지명경쟁입찰로 발주한 포장공사 등 합계 1,203건, 계약금액 합계 약 728억엔의 거의 전부에 대하여 담합을 반복하여 수주를 독점하여 왔다고 한다. 공취위에 따르면 수주희망업체가 지명업체에 사전에 전화를 걸어 응찰가격의 조정을 피하는 「가격연락」을 행하여 가격저하를 방지하여 왔다는 것이다.

■ '98. 4. 2, 요미우리신문 &  
'98. 4. 3, 아사히신문

## 기타

### 네덜란드, 본격적으로 카르텔 규제 개시

4월 1일, 새로운 네덜란드 경쟁당국인 NMA의 직원들은 눈이 흐릿할 정도로 피로했지만 여전히 분주했다. 사무실 문은 급격히 엄격해진 카르텔 관련 규칙으로부터의 적용제외 신청을 접수하기 위해 심야까지 열려 있었다.

중앙 정부기관이 야간에도 근무한다는 사실—9시 출근, 4시 퇴근이 일상화된 네덜란드에서는 전례 없는 일이다—은 발족한 지 3개월이 되는 NMA가 업무의 진행 방향을 바꿀 것이라는 신호였다.

그러나 수분마다 특급우편이 도착하는 등 동 기관의 야간 근무에 대한 수요가 상당하였다다는 것은 대다수의 네덜란드 기업들이 사업자간 협정을 과거와 같이 유지하고자 고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었다.

3월 30일 현재, 관리들은 108건의 카르텔 적용제외 신청을 접수하였다. 4월 1일 그들은 집계건수를 잊어버렸는데,

한 관리는 그 수가 “108건의 몇 배 이상이다”라고 하였다.

금년 초까지 카르텔은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허용되었었다. 그러나 이는 이제 유럽연합의 관행과 일치하도록 조정되고 있다. 가격에 관한 협정은 두 기업의 비용이 많이드는 제품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와 같이 건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가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상 가격 설정은 자유롭지만 현행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려는 기업들이 다른 수단에 의하여 시장에서 밀려나는 사업부문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암스테르담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2%의 표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도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사업자단체인 NVM은 비회원에게 동 단체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신규 부동산 매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동업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

NMA는 현재 90건의 제소를 조사중이며, 이들은 대부분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주장에 관한 것이다. 동 기관은 또한 연간 매출액 기준 25억 ECU(27억 달러) 미만의 기업결합 및 취득 제한을 검토할 의무가 있는데, 동 금액 이상의 경우에는 EU가 개입한다.

네덜란드 경쟁당국은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권한을 갖고 있으나, 초기 단계인 현재 80명의 직원들은 주로 제소사건 및 카르텔 적용제외 신청 처리에 주력하고 있다.

유럽연합 경쟁 담당위원인 Karel Van Miert는 네덜란드 정부에 대하여 다소 늦기는 하였으나 경쟁 문제에 자원을 배분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는 가능한 한 국별 경쟁당국에 사건을 이양하는 데 적극적이다.

NMA 사무국장이며 과거 민영화 문제에 대하여 네덜란드 정부에 조언한 바 있는 A. W. Kist는 현 상황에 만족하고 있다. 다소 역설적으로 그는 “네덜란드 경쟁법은 늦게 발족함으로 인해 도리어 출발상의 이점을 얻었기 때문에 좋은 법이다”라고 하였다. 다른 국가들의 과거의 실책이 교훈을 주었다는 것이다.

“나는 5년 후에 경쟁당국이 감독기관으로서 중앙은행과 같은 평판을 쌓기를 바란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문제되는 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해서 단지 낯빛을 바꾸기만 해도 될 것이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만일 이러한 희망이 현실로 된다면,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은 단지 직원들뿐만은 아닐 것이다.

■ '98. 4. 2, Financial Times